

檢 討 報 告

1. 提出者：瑞山市長

2. 提出日字：1998. 3. 31

3.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초지법중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농업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 시키고자 '98.4.10일부터 폐지되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4. 檢 討 意 見

-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되었던 서산시초지조성심의 위원회조례는 '97.4.10일 개정 공포되어 " 98.4.10일 시행 되는 초지법 제4조가 폐지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 초지법을 개정하면서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농업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 본 조례안을 폐지 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현행 제도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